

外國의 辨理士業務 및 訴訟代理制度

오스트리아 辨理士는 裁判官資格도 부여

辨理士 業務範圍

美 國

美國에서의 特許權 효력에 관한 감정, 特許權 침해 여부의 감정, 特許權 침해 손해액에 관한 감정, 工業所有權에 관한 상담업무에 관한 법률 문제는 「파텐트 아토니」 및 辯護士의 업무이고, 보통 이 업무는 「파텐트 아토니」가 행한다.

「파텐트 에이젠트」는 特許商標廳에 대한 업무를 代理할 수 있다.

特許權管理, 年金管理에 관한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외국에의 出願書類의 준비업무는 「파텐트 아토니」 및 「파텐트 에이젠트」가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의 辨理士는 特許權 효력에 관한 감정, 特許權 침해 여부에 관한 감정, 工業所有權에 관한 상담업무, 特許管理·연금관리에 관한 업무, 외국에의 出願書類준비에 관한 업무를 한다. 特許權 침해의 손해액에 관한 감정은 원칙적으로 辨理士의 업무가 아니나 실시료의 상당액이 손해액일 경우는 辨理士가 감정할 수 있다.

西 獨

西獨의 辨理士는 特許權 효력에 관한 감정, 特

許權침해 여부의 감정, 工業所有權에 관한 상담 업무, 特許權管理·연금관리에 관한 업무, 외국에의 出願書類의 준비에 관한 업무를 한다.

特許權 침해 손해액에 관한 감정은 재판소가 할 수 있다.

辨理士 資格이 없으면 직업인에 관한 특별한 법률에 따라 외국에의 出願을 할 수 없다.

辨理士는 植物特許法, 意匠法, 職務發明에 관한 법률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西獨에서의 企業辨理士는 自社 및 관련기업에 관한 업무만 一般辨理士가 할 수 있는 業務를 모두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辨理士는 特許權 효력에 관한 감정, 特許權 침해여부 감정, 工業所有權에 관한 상담, 외국에의 出願書類 준비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고, 特許權 침해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변호사나 판사를 보좌한다.

그리고 辨理士는 特許문헌조사 및 特許出願에 관한 업무를 한다.

英 國

英國에서의 特許權 효력에 관한 감정, 特許權 침해 여부 감정, 特許權 침해 손해액에 관한 감정, 工業所有權에 관한 상담업무, 特許管理·연금관리에 관한 업무는 辨理士가 할 수 있으며, 외국에의 出願書類 준비업무는 辨理士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英國商標辨理士協會의 辨理士는 일반 변리사가 하는 업무중 商標에 관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으며, 著作權 營業名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한다.

訴訟代理

美 國

美國에 있어서 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에서의 代理人은 「파텐트 아토니」 및 辯護士가 될 수 있다.

「파텐트 에이전트」는 特許廳의 판단등 기술 전문가로서 辯護士나 「파텐트 아토니」를 보좌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침해소송에 있어서 辨理士는 辯護士를 보좌하고,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辨理士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침해소송에 있어서 2명의 재판관중 1명은 재판소로부터 사건에 따라 임명된 변리사가 된다.

西 獨

침해소송에 있어서 辨理士는 辯護士를 보좌하고,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辨理士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한편 西獨企業辨理士協會의 소속 辨理士는 自社 및 관련기업에 관련기업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재판소가 반드시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다.

그리고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서 「스몰라이센스」 소유자에게도 기술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네덜란드

침해소송에 있어서 辨理士는 辯護士를 보좌하고 심결취소소송에 있어서는 辨理士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英 國

침해소송은 特許廳 또는 고등재판소의 어느 쪽에도 제소할 수 있고, 特許廳에 대해서는 「파텐트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될 수 있고, 재판소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辨理士가 辯護士를 보좌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에 대해서는 辨理士가 소송대리인이 된다.

한편 英國 商標辨理士協會 소속의 「트레이드마크 에이전트」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特許廳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法廷辯護士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고, 高等裁判所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事務辯護士를 통하여 法廷辯護士에게 조언할 수 있다.

日 本

종래 日本에서는 소송에서 辨理士가 재판소에서 보좌인으로 당사자나 대리인과 같이 출두하여 진술할 수 있었으나 1948年 辨理士法 改正으로 辨理士는 심결취소소송에 한하여 대리권이 인정되어 당사자를 위하여 변론하여 입증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변리사에게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인정해 준 취지는 辨理士가 기술적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주장을 하는데 필요하고, 재판소에서도 편리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그리고 辨理士가 代理人이 되는 것은 明細書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일본어로 통상의 기술용어를 사용하여 변론을 전개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고, 재판소에서도 그것을 이해할 능력이 필요하여 그점에서 辯護士가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변론을 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辨理士가 소송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